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56호 2023. 9. 26.(화)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702호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703호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9
 남해군 조례 제2704호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26호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3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58호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32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123호 남해군관리계획(방재시설: 하천, 깨밭골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48
 남해군 고시 제2023-12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50
 남해군 고시 제2023-127호 지적삼각점 세계측지계 좌표 성과 고시 51
 남해군 고시 제2023-129호 군계획시설(문화공원: 동대만생태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53
 남해군 고시 제2023-130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66
 남해군 고시 제2023-131호 남해군관리계획(체육시설: 서상스포츠파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8
 남해군 고시 제2023-132호 남해군관리계획(체육시설: 서상스포츠파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0
 남해군 고시 제2023-133호 사방지 지정 고시 72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702호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9월 2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대상은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군에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분기별로 별표 1에 따른 이·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은 분기별 지원기간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관리) ① 읍·면장은 매년 분기별로 관할 구역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읍·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④ 읍·면장은 관할 지역 지원대상자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은 군수가 발급한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에 의한다.

② 군수는 카드를 일괄 발급하여 해당 읍·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배부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분기별 지급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제7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이·미용업소 및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카드를 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 ①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는 군에 소재하는 이·미용업소 및 목욕업소로서 군수에게 등록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한다.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2. 이·미용 및 목욕 용역의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 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9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사용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2.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카드 배부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 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와 전문업체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가맹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카드사업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제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지원금액	15,000	15,000	15,000	15,000	
지급시기	1월 20일한	4월 20일한	7월 20일한	10월 20일한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 (재)발급 신청서

구 분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재)발급사유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남 해 군 수 귀하

※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남해군 조례 제2703호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9월 2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 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를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로명주소” 를 “지명 업무” 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구역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출석과” 를 “출석으로 개의하고” 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04호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9월 2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축제”란 문화·예술·관광·체육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위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최하거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백일장, 기념식 등 그 유형이 단일한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다. 경로행사, 동호인 행사 등 그 성격이 일부 계층에 특정되는 행사

2. “셔틀버스”란 군수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셔틀버스의 운영) ① 군수는 축제기간 중에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셔틀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일자, 시간 및 노선 등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26호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2023년 9월 2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등) ①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물 유통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사용 및 연장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청경해)로 지정받은 품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인증 등을 받았거나, 「식품산업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증(지정)받은 품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남해군 통합브랜드(보물섬) 인증 받은 품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4. 남해군 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제한) 수산물 공동브랜드 신청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 1.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경남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품질인증기관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 2.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정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 3.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제8조(심사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명칭, 상호 등 무형자산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관계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군수가 제출한 예비심사 조사보고서에 따라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0일 이내에 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권 부여)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이 적합으로 판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방법) ①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표시는 군수가 제작한 스티커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포장재 제작에 드는 비용은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부담한다.

- ②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조례 별표에 따른 수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 ③ 수산물 공동브랜드는 조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승인품목 포장재 이외의 장소에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표시를 하려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승인품목의 관리) ① 군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기별로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승인품목에 대한 조사)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승인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2. 출하·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3.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표시 방법과 디자인 매뉴얼의 일치 여부
4.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허위표시 여부

제13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①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4조(보고) ① 군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용기·포장재 등에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출하 실적을 연도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재기준) 조례 제9조2항에 따른 제재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6조(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기회)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자는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권 정지 및 취소를 할 경우 해당자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상표법」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가 상표권을 취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 목	배점	심사기준	평점
생산자재 확보	10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현장 조사
	7	○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생산포장 입지	10	○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현장 조사
	7	○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 위 사항 전부 부적합한 곳	
자체 품질관리 수준 (기술·시설·기자재)	10	○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 관리가 체계적	
	7	○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5	○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품질관리 열의도	10	○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7	○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5	○ 실천이 미흡한 경우	

※ 평가방법

- 전체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4개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별표 2]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제재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더 강력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경과된 제재기간은 제외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제재 사유	제재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 3개월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상표를 표시한 경우	"	"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	"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 1개월	"
출하 및 로고 등 관리일지 기록·관리에 소홀한 경우	"	"
승인 품목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시정지 3개월	취소대상 (심의의결)
관계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	"	"
남해군에서 가공하지 않은 수산가공품을 남해군에서 가공한 수산가공품으로 거짓 유통한 경우	"	"
남해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을 남해군에서 생산된 수산물로 거짓 유통한 경우	"	"
불량자재, 불량시설 및 불량 장비의 사용으로 불량한 공정 또는 불량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	"	"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	"
사용승인 권한으로 만든 포장재 또는 스티커 등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	"
승인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	"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	"

[별지 제1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생산자현황	사업장소재지		생산방법	
	생산규모		시설현황	
	연간총생산량(톤)		연간총생산액(천원)	

품목명	인증구분	출하량(톤)	포장단위(kg)	(사용·연장)기간	출하처	
					국내	국외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사용신청 시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장구, 유통 등)

【연장신청 시 구비서류】

1. 기존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 사용권 승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단체)명 :

연 락 처 :

주 소 :

신청품목 (인증구분) :

1. 위 본인은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 준수 각서를 제출하여,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군내에서 가공한 품목만을 대상으로 취급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신청단체명		대표자	
품목		출하계획량	
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 여건			
특별사항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전년도 판매액,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방법 등
- 특별사항 : 위에 기재하지 않는 특별한 사항 기재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예비심사 조사보고서

1. 신청내용

신청인	단체명		참여 어가 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생산계획량		
	포장(공장) 소재지			

2. 심사결과

분 야	항 목	조사내용 (우수-10, 양호-7, 보통-5)
가. 일반여건	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연간판매액 ⑤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산여건	① 지역자원 활용도 ② 생산자재 확보 ③ 생산포장 입지	
다. 품질관리 여건	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기술, 시설, 기자재) ② 품질관리 열의도	
계	10개 항목	점
주거래사항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	

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위원장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 사용권 승인서

- 승인번호 :
- 업체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승인품목 :
- 승인기간 :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서 위와 같이 남해군수가 인증하고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의 사용 품목으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표시 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생산자현황	사업장소재지		생산방법	
	생산규모		시설현황	
	연간총생산량(톤)		연간총생산액(천원)	
표시처 및 표시장소		표시기간	표시물량	표시사유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표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확 인 서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법인 또는 단체명	
		연락처	
품 목 명		조사장소	
수 량			

위반 내용	
----------	--

특이 사항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재심의 요구서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법인(단체)명 : 연 락 처 :
- 주 소 :
- 신청품목 :
- 신청사유 :

위 본인은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이번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어 신청사유를 작성하여 해당 심의 건과 관련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58호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을 발령한다.

2023년 9월 2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해군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남해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4. “공무직근로자”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6.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7. “관리부서”란 근로자의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채용담당부서”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을 총괄하는 부서 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9. “소속부서”란 근로자의 복무를 관장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10.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11. “부정합격자”란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남해군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남해군이 정하는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근로자 채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남해군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소속부서는 매년 8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인원을 특정하고, 근로자의 직종, 채용인원, 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계획을 토대로 사전심사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지침에 따른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채용 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9월 중순까지 소속부서 및 예산부서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연도 중에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소속부서는 미리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채용원칙)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 인력, 특정 성별,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① 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용 담당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4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 1. 서류전형
- 2. 필기시험
- 3.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 4. 면접전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채용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자재를 취급하는 경우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신원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채용예정자의 직무 수행에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최근 검진 대상연도의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공무직근로자는 소속부서의 의견을 들어 관리부서에서 채용하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소속부서에서 직접 채용한다.

⑥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공고)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남해군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근로조건, 채용절차 및 채용일정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1.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 2.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3.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경우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원서접수 마감일 3일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공무원근로자 채용공고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 1. 휴직·파견·퇴직·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대응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신속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채용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④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채용일정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고문번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② 채용권자는 공무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채용권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전형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사람
 -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
 -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 심사위원 회피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 ④ 응시자가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심사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2조(원서접수) ① 근로자의 채용에 원서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응시원서
 - 2. 자기소개서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 4.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 1. 응시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2. 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3. 응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13조(서류전형)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으로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평정 항목,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권자가 사전에 결정하여 채용공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4조(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① 채용권자는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권자가 사전에 결정하여 채용공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채용권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다음 전형의 일시·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5조(면접전형) ① 채용권자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면접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권자가 사전에 결정하여 채용공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면접전형 심사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권자는 면접전형 심사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전형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동점자처리기준)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동점자처리기준은 채용권자가 사전에 결정하여 채용공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채용권자가 사전에 정하여 채용공고에 반영하고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채용공고 시 예비합격자 결정 여부·규모·임용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채용점검위원회 운영) ① 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담당부서의 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다.

⑤ 채용권자는 최종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2.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근거가 명시된 경우 조회하여야 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 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사전 협의 하에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을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신규채용 된 근로자 중 소속 부서장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 4. 그 밖에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2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와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3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2.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별지 제5호서식)
4.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1부(별지 제6호서식)
5.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4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기준

□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사람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 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 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별지 제1호서식]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관련문서	○○○○과-0000호		
채용구분	[]공무직 [] 기간제·단시간	전형구분	[] 서류전형 [] 면접전형

서 약 서

본인은 0000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남해군의 심사위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반 보안사항 유출 등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채용 심사위원 회피신청서

채용담당부서 :

채용분야 :

회피대상자 : 명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유

회피 사유

○ 예시 :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평정에 참여하지 않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_____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
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 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u> <u>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5년 내)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123호

남해군관리계획(방재시설 : 하천, 개발골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남해군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해 군 수

- 1. 남해군관리계획(하천) 결정(변경)조서 : 붙임 참조
- 2.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5)에 비치]

[붙임1]

남해군관리계획(하천) 결정(변경)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1. 방재시설

가.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연장(k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60	개발골천	소하천	삼동면 동천리 119	삼동면 동천리 67	11,620	1.04	남해군고시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60	개발골천	소하천	삼동면 동천리 119	삼동면 동천리 68	12,059	1.07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0	개발골천	○면적증가(증 439㎡) - A = 11,620㎡ → 12,059㎡	○ 소하천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소하천구역에 적합하도록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남해군 고시 제2023-12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창선천(지방하천)
2. 성 명 : 남해군 상하수도과장
3.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4. 점용목적 : 상하수도 시설 설치
5. 점용위치 : 경남 남해군 창선면 옥천리 411-1, 374-1
6. 점용면적 : 영구 1.13㎡ / 일시 8.5㎡
7. 점용기간 : 2023. 9. 1. ~ 영구

남해군 고시 제2023-127호

지적삼각점 세계측지계 좌표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삼각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5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 : 26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남해군 삼각점 고시 목록

경남434	34 46 54.4727	127 58 34.4045	243322.131	289355.102	-3227197.733	4134159.806	3618254.744	426.779	중부	143013.28	289280.28	398.765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116-8
경남435	34 47 09.3504	127 56 51.6873	243755.504	286739.066	-3224908.433	4135471.271	3618553.037	289.574	중부	143446.96	286664.37	261.625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203-5
경남436	34 46 12.8283	127 55 02.8125	241988.050	283986.849	-3223224.998	4137814.653	3616997.299	70.317	중부	141679.47	283912.20	42.443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산229-1
경남438	34 48 23.4842	127 58 22.8230	246062.370	289034.043	-3225836.579	4132894.517	3620319.995	98.405	중부	145753.40	289559.33	70.393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난음리 336-1
경남442	34 54 45.3515	128 01 18.4459	257875.052	293378.184	-3225285.828	4124943.028	3630060.600	246.931	중부	157566.21	293303.66	217.782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산81
경남443	34 53 41.7764	128 02 12.3539	255929.862	294766.993	-3226970.725	4124875.765	3628358.918	80.060	중부	155620.94	294692.27	51.890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산8-2
경남444	34 51 55.7375	128 00 11.5201	252630.720	291731.553	-3225750.689	4128297.325	3625730.689	171.855	중부	152322.11	291656.46	143.759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산20-2
경남445	34 51 29.2160	128 01 24.6771	251832.174	293598.135	-3227451.649	4127456.008	362502.599	71.324	중부	151523.06	293523.12	43.182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산44
경남447	34 47 21.0684	128 03 15.8992	244214.106	296503.882	-3232404.600	4129199.719	3618765.726	142.553	중부	143905.36	296429.14	114.355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138-2
경남448	34 45 55.3289	128 02 55.7583	241566.463	296019.409	-3233004.673	4130797.225	3616679.327	289.558	중부	141257.62	295944.55	261.378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8
경남450	34 44 28.5301	128 01 36.1558	238870.647	294022.325	-3232447.739	4133371.251	3614592.117	483.472	중부	138561.92	293947.53	455.347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이조면 송장리 산114-2
경남451	34 43 05.1797	127 59 45.8750	236273.805	291242.359	-3230981.024	4138050.909	3612304.123	172.818	중부	135965.09	291167.66	144.770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삼주면 상주리 산124-3
경남465	34 50 45.5694	127 50 44.5870	250335.495	277349.461	-3215472.001	4138538.462	3624321.848	81.689	중부	150028.09	27276.10	783.959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노구리 산99-1
경남467	34 54 40.6532	127 52 28.6529	257602.863	279930.141	-3214767.670	4133825.986	3623983.409	318.521	중부	157293.44	279856.60	290.711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서리 산8
경남469	34 53 45.5949	127 51 48.6457	255897.283	278829.145	-3214469.531	4134597.229	3628466.969	135.185	중부	155598.66	278854.83	107.403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산36-1
경남509	34 44 17.3967	127 51 12.9394	238379.291	279171.486	-3219876.437	4143031.719	3614097.932	111.014	중부	138070.42	278097.03	83.298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1175-2
경남510	34 45 49.9826	127 50 49.3228	241227.408	277546.651	-3218425.278	4142143.237	3616466.001	152.801	중부	140918.59	277472.18	125.093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1516-26
경남511	34 50 18.2835	127 52 11.4092	249513.489	279562.580	-3217335.919	4137341.744	3623455.792	468.828	중부	149204.81	279468.18	441.045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를 풍환리 산105
경남512	34 55 11.7590	127 51 25.4075	258547.584	278316.374	-3213058.298	4133740.479	3630647.607	105.630	중부	158239.17	278241.93	77.858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지면리 559-6
경남513	34 55 06.2462	127 54 49.1123	260272.502	283471.793	-3216575.873	4129844.629	3632057.759	164.079	중부	159983.99	283397.20	136.175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신평면 문리리 산77
경남547	34 44 24.7753	128 02 44.0389	238772.732	295750.398	-3233867.350	4132127.626	3614293.167	125.727	중부	138463.19	295676.15	97.558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이조면 송장리 산89-2
경남548	34 43 08.7625	127 59 39.6048	236382.639	291081.718	-3230771.566	4136041.938	3612344.204	83.850	중부	136073.25	291007.34	55.806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삼주면 상주리 528-9
경남549	34 45 37.3085	127 54 12.7069	240881.890	282722.525	-3222807.703	4139095.798	3616103.217	79.274	중부	140572.78	282648.28	51.435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석교리 183
경남550	34 43 42.2466	127 52 06.4302	237307.797	279541.611	-3221314.848	4142664.813	3613191.193	81.851	중부	136998.77	279467.26	54.103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153-2
경남560	34 55 25.7629	127 55 24.1449	259033.055	284372.398	-3217671.154	4129803.821	3630983.649	74.526	중부	158724.45	284297.95	46.602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신평면 금림리 525
경남582	34 49 55.1916	127 56 06.6964	248855.656	285547.553	-3222082.282	4133706.193	3622801.595	31.002	중부	148546.96	285472.87	3.071	2016.07.2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739-4

남해군

남해군 고시 제2023-129호

군계획시설(문화공원 : 동대만생태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남해군 고시 제2021-9호(2021.01.12.)로 결정 고시된 군계획시설(문화공원)에 대하여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9월 14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군계획시설(문화공원:동대만생태공원) 조성사업
- 명 칭 : 동대만생태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 면적 : 26,816㎡ → 27,043㎡ (증22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남해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로부터 12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2023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1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붙임2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에 비치】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기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125,737	26,816					
1	창선면	상신리	1	1	답	8,051	8,010	남해군				
2	창선면	상신리	1	2	도로	293	293	남해군				
3	창선면	상신리	1	3	답	281	281	남해군				
4	창선면	상신리	1	4	답	458	458	남해군				
5	창선면	상신리	1	5	답	2,017	1,506	남해군				
6	창선면	상신리	1	7	답	13,989	8,008	남해군				
7	창선면	상신리	1	8	답	325	325	남해군				
8	창선면	상신리	1	9	답	1,133	1,133	남해군				
9	창선면	상신리	1	10	도로	76	76	남해군				
10	창선면	상신리	1	13	답	580	580	남해군				
11	창선면	상신리	1	14	도로	12	12	국토교통부				
12	창선면	상신리	1	15	답	108	108	남해군				
13	창선면	상신리	1	16	답	28	28	남해군				
14	창선면	상신리	1	17	도로	201	6	남해군				
15	창선면	상신리	1	19	답	36	36	남해군				
16	창선면	상신리	1	23	답	2,540	286	남해군				
17	창선면	상신리	1	29	답	14	13	남해군				
18	창선면	상신리	342		답	617	617	손*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08번길			
19	창선면	상신리	342	1	답	172	172	손*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08번길			
20	창선면	상신리	343		답	2,525	2,525	이*철	진주시 도동천로			3/4
								이*자	진주시 신안들말길 26번길			1/4
21	창선면	상신리	343	1	답	192	192	장*기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22	창선면	상신리	344		답	983	983	박*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23	창선면	상신리	344	1	답	26	26	박*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24	창선면	상신리	347	1	제방	332	85	국토교통부				
25	창선면	상신리	347	2	잡종지	244	244	남해군				
26	창선면	상신리	347	4	잡종지	27	27	남해군				
27	창선면	상죽리	10	2	잡종지	90,477	786	기획재정부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27,043	27,043					
1	창선면	상신리	1	1	답	36	36	남해군				1단계
2	창선면	상신리	1	30	답	8,015	8,015	남해군				1단계
3	창선면	상신리	1	2	도로	293	293	남해군				1단계
4	창선면	상신리	1	3	답	281	281	남해군				1단계
5	창선면	상신리	1	4	답	458	458	남해군				1단계
6	창선면	상신리	1	31	답	1,587	1,587	남해군				1단계
7	창선면	상신리	1	41	답	168	168	남해군				1단계
8	창선면	상신리	1	34	답	8,188	8,188	남해군				1단계
9	창선면	상신리	1	8	답	325	325	남해군				1단계
10	창선면	상신리	1	9	답	1,133	1,133	남해군				1단계
11	창선면	상신리	1	10	도로	76	76	남해군				1단계
12	창선면	상신리	1	13	답	580	580	남해군				1단계
13	창선면	상신리	1	37	답	286	286	남해군				1단계
14	창선면	상신리	1	38	답	13	13	남해군				1단계
15	창선면	상신리	1	32	잡종지	9	9	남해군				1단계
16	창선면	상신리	1	39	답	4	4	남해군				1단계
17	창선면	상신리	1	40	답	1	1	남해군				1단계
18	창선면	상신리	1	42	잡종지	2	2	남해군				1단계
19	창선면	상신리	342		답	617	617	손*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308번길 29-6, 203호			2단계
20	창선면	상신리	343		답	2,525	2,525	이*철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천로 120, 101동 703호(상대동, 상대한보타운)			2단계 (3/4)
								이*자	진주시 신안들말길 26번길 5-5(신안동)			2단계 (1/4)
21	창선면	상신리	344		답	983	983	박*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55 신개금엘지아파트 203-1702			2단계
22	창선면	상신리	347	5	제방	81	81	국토교통부				1단계
23	창선면	상신리	347	2	잡종지	244	244	남해군				1단계
24	창선면	상신리	347	4	잡종지	27	27	남해군				1단계
25	창선면	상죽리	10	53	잡종지	233	233	기획재정부				1단계
26	창선면	상죽리	10	55	잡종지	74	74	기획재정부				1단계
27	창선면	상죽리	10	56	잡종지	376	376	기획재정부				1단계
28	창선면	상죽리	10	58	잡종지	329	329	기획재정부				1단계
29	창선면	상죽리	10	59	잡종지	1	1	기획재정부				1단계
30	창선면	상죽리	10	60	잡종지	98	98	기획재정부				1단계

[붙임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용도지구

1.1.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1	상신 개발진흥 지구	관광·휴양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상신매립지)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205,40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변경	11	상신 개발진흥 지구	관광·휴양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상신매립지)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204,47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상신 개발진흥지구	○구역축소(감930㎡) A=205,400㎡→204,470㎡	○ 도로구역과의 중복구간을 개발진흥지구 에서 제척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상신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창선면 상신리 1-1번지일원	205,400	감)930	204,47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상신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축소(감930㎡) A=205,400㎡→204,470㎡	○ 도로구역과의 중복구간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에서 제척하고자 함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3.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05,400	감)930	204,470	100.0		
체육시설 용지	체육시설소계	66,540	감)350	66,190	32.4	
	체육시설	44,132	-	44,132	21.6	
	승마장	11,162	-	11,162	5.4	
	주차장	2,780	-	2,780	1.4	
	조경·완충녹지	8,466	감)350	8,116	4.0	
관광휴양 시설용지	관광휴양소계	8,355	감)3	8,352	4.1	
	간이역	4,210	-	4,210	2.1	
	보물섬레일파크	3,100	-	3,100	1.5	
	광장 및 근린생활시설	1,045	감)3	1,042	0.5	
공공시설 용지	공공시설소계	8,910	감)6	8,904	4.3	
	주차장	1,889	-	1,889	0.9	
	도로	7,021	감)6	7,015	3.4	
녹지용지	녹지소계	121,595	감)571	121,024	59.2	
	녹지(유수지)	89,679	-	89,679	43.9	
	조경·완충녹지	5,100	감)798	4,302	2.1	
	공원	26,816	증)227	27,043	13.2	

3.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3.2.1.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3	1	12	국지 도로	374	상신리 1-3 답	상죽리 10-9답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단지내 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6	중로3-1	상신리 1-7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21-9호 (2021.1.12)	단지내 도로
기정	소로	3	51	6.5	국지 도로	1,897	상신리 353	오용리 1243-4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21-9호 (2021.1.12)	구역내 L=420

■ 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1	중로3-1	○면적변경(감6㎡) -A = 4,490㎡ → 4,484㎡	○ 동대만생태공원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면적 일부변경

3.2.2. 주차장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창선면 상죽리 10-9답 일원	2,780	-	2,78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기정	3	주차장	창선면 상신리 1-7답 일원	1,889	-	1,889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3.2.3. 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동대만 생태공원	문화 공원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26,816	증)227	27,043	남해군고시 제2021-9호 (2021.1.12)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동대만 생태공원	○ 면적변경(증227㎡) (A=26,816㎡ → 27,043㎡)	○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면적변경

3.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05,400	감)930	204,470			205,400	감)930	204,470	
-	I	66,540	감)350	66,190	I-1	창선면 상죽리 10-9번지 일원	44,132	-	44,132	체육시설
					I-2	창선면 상죽리 10-3번지 일원	11,162	-	11,162	체육시설
					I-3	창선면 상죽리 10-9번지 일원	2,780	-	2,780	체육시설
					I-4	창선면 상죽리 10-15번지 일원	8,466	감)350	8,116	체육시설
-	II	8,355	감)3	8,352	II-1	창선면 상신리 2-1번지 일원	4,210	-	4,210	관광 휴양시설
					II-2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3,100	-	3,100	관광 휴양시설
					II-3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1,045	감)3	1,042	관광 휴양시설
-	III	8,910	감)6	8,904	III-1	창선면 상죽리 10-3번지 일원	4,490	감)6	4,484	공공시설
					III-3	창선면 상신리 1-23번지 일원	1,889	-	1,889	공공시설
					III-4	창선면 상신리 1-23번지 일원	297	-	297	공공시설
					III-5	창선면 상죽리 10-1번지 일원	2,234	-	2,234	공공시설
-	IV	121,595	감)571	121,024	IV-1	창선면 상죽리 10-2번지 일원	89,679	-	89,679	녹지
					IV-3	창선면 상죽리 10-27번지 일원	5,100	감)798	4,302	녹지
					IV-4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26,816	증)227	27,043	녹지

3.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체육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I-1	용도	지정용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2	용도	지정용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승마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3	용도	지정용도	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배 치	-	
		건 축 선	-	
	I-4	용도	지정용도	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배 치		-		
건 축 선		-		

☑ 관광휴양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	II-1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제15호, 제27호 규정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2	용도	지정용도	보물섬레일파크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3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제27호 규정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I	III-1 III-4 III-5	용 도	지정용도	도로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I-3	용 도	지정용도	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녹지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V	IV-1 IV-3	용 도	지정용도	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V-4	용 도	지정용도	공원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용 적 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높 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4.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조성계획 총괄표 (변경)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816	증)227	27,043	100.0	
도로 및 광장	6,216	-	6,216	23.0	
조경시설	399	-	399	1.5	
휴양시설	1,888	-	1,888	7.0	
유희시설	966	-	966	3.6	
교양시설	1,011	-	1,011	3.7	
편익시설	943	-	943	3.5	
공원관리시설	75	-	75	0.3	
녹지 및 기타	15,318	증)227	15,545	57.4	조경·완충녹지

☑ 시설별 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기호	부지면적 (㎡)			규모/수량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26,816	증)227	27,043		
시설면적			11,498	-	11,498		
도로/광장	소계		6,216	-	6,216		
	도로		4,160	-	4,160		
	광장	가-1	453	-	453		
		가-2	473	-	473		
		가-3	426	-	426		
		가-4	425	-	425		
조경시설	소계		399	-	399		
	습지탐방로	나-1	216	-	216		
		나-2	183	-	183		
	꽃잎트렐리스	①				1	
	꽃잎조형물	②				6	
	보행교	③				1	
휴양시설	소계		1,888	-	1,888		
	잔디광장	다-1	1,260	-	1,260		
	휴게쉼터	다-2	339	-	339		
	데크쉼터	다-3	289	-	289		
	퍼골라	⑤				7	
	막구조퍼골라	⑥				7	
유희시설	휴게트렐리스	⑦				1	
	소계		966	-	966		
	테마놀이터	라	966	-	966		
교양시설	그물놀이대	⑧				1	
	소계		1,011	-	1,011		
	테마정원	마-1	563	-	563		
편익시설		마-2	290	-	290		
		마-3	158	-	158		
	소계		943	-	943		
공원관리시설	지역특산물장터	바-1	750	-	750		
	먹거리쉼터	바-2	193	-	193		
	소계		75	-	75		
녹지/기타	관리사무소	사-1	60	-	60		대표소 포함
		사-2	15	-	15		
녹지/기타	소계		15,318	증)227	15,545		
	녹지		15,318	증)227	15,545		

남해군 고시 제2023-130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18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19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위도	경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1	16543	도근점	중부	250447.660	274341.234	52.850	34°50'50.0161"	127°48'46.2233"	8.22	서면 남상리 1396-18	철재	남해군청	
2	16544	도근점	중부	250409.604	274337.431	36.060	34°50'48.7823"	127°48'46.0635"	8.22	서면 남상리 1396-18	철재	남해군청	
3	16545	도근점	중부	250423.802	274254.338	69.764	34°50'49.2648"	127°48'42.7976"	8.22	서면 남상리 1396-22	철재	남해군청	
4	16546	도근점	중부	250372.709	274347.044	58.808	34°50'47.5826"	127°48'46.4301"	8.22	서면 남상리 1396-13	철재	남해군청	
5	16547	도근점	중부	250320.152	274338.363	70.214	34°50'45.8795"	127°48'46.0717"	8.22	서면 남상리 1396-16	기타	남해군청	
6	16548	도근점	중부	250306.377	274345.325	72.064	34°50'45.4307"	127°48'46.3413"	8.22	서면 남상리 1340-3	기타	남해군청	
7	16549	도근점	중부	250288.849	274325.641	66.135	34°50'44.8672"	127°48'45.5610"	8.22	서면 남상리 1396-13	철재	남해군청	
8	16550	도근점	중부	250244.694	274321.208	51.731	34°50'43.4356"	127°48'45.3724"	8.22	서면 남상리 1396-13	철재	남해군청	
9	16551	도근점	중부	250215.640	274332.655	40.718	34°50'42.4899"	127°48'45.8137"	8.22	서면 남상리 1396-13	철재	남해군청	
10	16552	도근점	중부	250218.196	274357.216	25.224	34°50'42.5664"	127°48'46.7812"	8.22	서면 남상리 1339	철재	남해군청	
11	16553	도근점	중부	250422.585	274378.593	14.781	34°50'49.1926"	127°48'47.6877"	8.22	서면 남상리 1363	철재	남해군청	
12	16554	도근점	중부	250423.396	274450.645	8.639	34°50'49.2000"	127°48'50.5239"	8.22	서면 남상리 1386-1	철재	남해군청	
13	16555	도근점	중부	250492.878	274439.674	4.682	34°50'51.4574"	127°48'50.1142"	8.22	서면 남상리 1808-10	철재	남해군청	
14	16556	도근점	중부	250515.542	274364.587	3.526	34°50'52.2125"	127°48'47.1662"	8.22	서면 남상리 1808-10	철재	남해군청	
15	16557	도근점	중부	250580.747	274328.725	8.613	34°50'54.3377"	127°48'45.7755"	8.22	서면 남상리 1396-23	철재	남해군청	
16	16558	도근점	중부	250628.746	274336.499	14.240	34°50'55.8931"	127°48'46.0968"	8.22	서면 남상리 1399	철재	남해군청	
17	16559	도근점	중부	250673.064	274284.029	21.658	34°50'57.3449"	127°48'44.0457"	8.22	서면 남상리 1396-18	철재	남해군청	
18	16560	도근점	중부	250593.859	274291.914	17.006	34°50'54.7728"	127°48'44.3308"	8.22	서면 남상리 1396-18	철재	남해군청	
19	16561	도근점	중부	250512.007	274319.832	16.835	34°50'52.1096"	127°48'45.4035"	8.22	서면 남상리 1396-18	철재	남해군청	

남해군 고시 제2023-131호

남해군관리계획(체육시설 : 서상스포츠파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82-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체육시설 : 서상스포츠파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9월 19일

남 해 군 수

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참조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붙임]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서상 스포츠 파크	종합 운동시설	서면 서상리 1182-1일원	223,005	-	223,005	경상남도 고시 제1998-49호 (1998.03.12.)	

나. 체육시설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공간적 범위	위치	지정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가	서상 스포츠파크	체육 시설	서면 서상리 1182-1일원	200,689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에 따른 체육시설
신설	나	서상 스포츠파크	경찰 수련원	서면 서상리 1182-1일원	22,316	-	○ 건축용도: 경찰수련원 ○ 건축규모 - 건폐율: 40% 이하 - 용적률: 100% 이하 - 높 이: 4층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체육시설 공간적 범위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서상 스포츠 파크	○ 공간적 범위 신설 - 체육시설 200,689㎡ - 경찰수련원 22,3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지상 일정공간에 체육시설의 공간적 범위를 결정, 잔여공간에 대하여 체육시설 설치·이용 및 장래 확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물(경찰수련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고자 함.

남해군 고시 제2023-132호

**남해군관리계획(체육시설 : 서상스포츠파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난 2023년 9월 19일(남해군 고시 제2023-131호) 고시된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82-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체육시설 : 서상스포츠파크)에 대하여 지적분할 측량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공간적 범위 결정구역 변경을 위하여 금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9월 20일

남 해 군 수

- 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붙임]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서상 스포츠 파크	중 합 운동시설	서면 서상리 1182-1일원	223,005	-	223,005	경상남도 고시 제1998-49호 (1998.03.12.)	

나. 체육시설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공간적 범 위	위치	지정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가	서상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서면 서상리 1182-1일원	200,689	남해군 고시 제2023-131호 (2023.09.19.)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에 따른 체육시설
변경	가	서상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서면 서상리 1182-1일원	201,262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에 따른 체육 시설
기정	나	서상 스포츠파크	경찰 수련원	서면 서상리 1182-1일원	22,316	남해군 고시 제2023-131호 (2023.09.19.)	○ 건축용도: 경찰수련원 ○ 건축규모 - 건폐율: 40% 이하 - 용적률: 100% 이하 - 높 이: 4층 이하
변경	나	서상 스포츠파크	경찰 수련원	서면 서상리 1182-20일원	21,743	-	○ 건축용도: 경찰수련원 ○ 건축규모 - 건폐율: 40% 이하 - 용적률: 100% 이하 - 높 이: 4층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체육시설 공간적 범위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서상 스포츠 파크	○ 공간적 범위 변경 - 체육시설 200,689㎡ → 201,262㎡ - 경찰수련원 22,316㎡ → 21,743㎡	○ 지난 2023년 9월 19일 고시된 군관리계획(체육시 설: 서상 스포츠파크 공간적 범위) 결정의 건에 대 하여 지적분할 측량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기 결정 된 공간적 범위를 변경하여 결정하고자 함.

남해군 고시 제2023-133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23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제3항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남 해 군 수

1. 지정내역 : 붙임 지정내역 참조
2. 지정사유 : 2023년 사방사업 추가 시행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계류보전)
4. 지정 년월일 : 2023. 9. 20.
5.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 구역도 참조
6.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7.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24) 또는 남해군 산림공원과 산림조성팀(055-860-36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지 지정 조서			
2023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계류보전)-남해권역			
토 지 소유자	성 명	회룡*** 외	
	주 소		
토 지 소 재 지		남해군 서면 중현리 산181 외	
조 사 년 월 일		2023년 9월 일	
사업계획 승인 년월일		2023년 9월 일	
사방지 지정 면적		214	㎡
사방지 지정 사유		2023년도 사방사업을 실시할 지역에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정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left;"> <p>조 사 자 직 급 :</p> <p>성 명 :</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p>지방녹지주사보</p> <p>박 홍 근 (인)</p> </div> </div>			

사방지 지정 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사업명)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계					27,280	214			
남해	서	중현	1574	구	10,443	35	국(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하반기(추가) 계류보전사업 (남해서중현지구)
			산181	면	16,837	179	회룡***		

* 주의사항 : 고시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성명 및 주소 ** 처리